##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29

발의연월일: 2025. 5. 29.

발 의 자:양문석・이강일・허성무

부승찬 • 박수현 • 조계원

김재원 · 오세희 · 이광희

김 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 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 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법률 제 호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 매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생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으로 처벌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		
	매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		
	른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적 프		
	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웃돈을		
	<u>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u>		
	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